

2024-2025
국제라이온스협회 355-B1지구
지구헌장 개정(안)



2024-2025 제1회 대의원대회 개정

© 일

시 : 2025년 3월 14일

현행	개정 및 신설(안)	개정사유
제2장 회원		
<p>제8조 (제회비)</p> <p>① 본 지구 단위클럽은 회원에 대하여 국제이사회와 복합지구 및 지구임원회에서 정한 상·하반기분 회비를 매년 8월 말일과 2월 말일까지 본 지구 사무국에 납입하여야 한다. (단, 제회비를 기한내 납입하지 않을 시는 국제헌장에 준한 연체료를 부과한다.)</p>	<p>② 본 지구의 제회비는 지구 임원회의의 결을 거쳐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변경(인상 또는 인하)할 수 있다.</p>	내용삽입
<p>제10조 (회원의 자격상실 및 신생클럽 조직, 지구 내 자매클럽)</p> <p>★ 회원의 자격상실</p> <p>② 지구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로 제명된 자는 5년 동안 회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.</p> <p>③ 클럽 이사회에서 제명된 자가 타 클럽으로 재입회하는 전 클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★ 신생클럽 조직</p> <p>② 신생클럽 회원의 90%는 전입이 아닌 신입회원 이어야 한다. 그러나 현존 클럽으로부터 상호 동의로 분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	<p>★ 회원의 자격상실</p> <p>② - 지구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로 제명된 자(개명한 자 포함)는 5년 동안 회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.</p> <p>③ - 클럽에서 타 클럽으로 재 입회하는 전 클럽의 동의를 받아 지구 본부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.</p> <p>★ 신생클럽 조직</p> <p>② 신생클럽 회원의 90%는 전입이 아닌 신입회원 이어야 한다. 그러나 현존 클럽으로부터 분쟁 없이 상호 동의로 분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	문구수정 내용수정 문구삽입
제4장 지구임원회		
<p>제16조 (임원회 구성)</p> <p>① 지구 총재, 직전총재, 전총재, 지구 제1·제2부총재, 감사, 사무총장, 재무총장, 부총장, 지역위원장, 지대위원장, 지구위원장, 총재고문, 분과위원장, 부위원장으로 지구 임원회를 구성한다.</p>	<p>① 지구총재, 직전총재, 전총재, 지구 제1부·제2부총재, 감사, 사무총장, 재무총장, 부총장, 지역위원장, 지대위원장, 지구위원장, 총재상임고문, 총재고문, 분과(기획)위원장으로 지구임원회를 구성한다.</p>	내용수정 문구삽입
<p>제19조 (임무 및 임기)</p> <p>⑥ 지구 총재 및 지구 제1·제2부총재 임기는 선거가 있던 해의 국제대회가 끝나면서 시작되며 차기 국제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며 연임하지 못한다.</p>	<p>⑥ 지구 총재 및 지구 제1·제2부총재 임기는 선거가 있던 해의 국제대회 폐회식날 시작되며 국제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며 연임하지 못한다.</p>	문구수정

현행	개정 및 신설(안)	개정사유
제5장 지구총재 및 지구 제1부·제2부 총재		
<p>제22조 (지구 제1·제2부총재 후보 자격) (국제헌장 부칙 제9조 6항 b, c)</p> <p>㉔ 지구 제2부총재로 단일 입후보한 자가 또는 지구 제2부총재가 지구 제1부총재로 입후보하여 과반수 득표에 실패할 경우 향후 3년간 입후보 할 수 없다.</p>	<p>㉔ 지구 제2부총재로 단일(단독) 입후보한 자 또는 지구 제2부총재가 지구 제1부총재로 단일(단독) 입후보하여 과반수 득표에 실패할 경우 향후 3년간 입후보 할 수 없다. 단, 경선일 경우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더라도 기간에 상관없이 재입후보 할 수 있다.</p>	문구삽입 내용수정
<p>제24조 (접 수)</p> <p>㉔ 입후보 신청서(지구본부에 비치)</p> <p>㉕ 본인 승낙서(지구본부에 비치)</p> <p>㉖ 소속클럽 이사회의 추천 결의서(지구본부에 비치)</p> <p>㉗ 라이온 경력 및 일반 경력서</p> <p>㉘ 연설문 원고(200자 원고자 5매 이내)</p> <p>㉙ 주민등록등본 1부</p> <p>㉚ 사진 1매(명함판)</p>	<p>제24조 (접 수)</p> <p>㉔ 입후보 신청서(지구본부에 비치)</p> <p>㉕ 본인 승낙서(지구본부에 비치)</p> <p>㉖ 소속클럽 이사회의 추천 결의서(지구본부에 비치)</p> <p>㉗ 라이온 경력 및 일반 경력서</p> <p>㉘ 연설문 원고(A4용지 2장 분량)</p> <p>㉙ 주민등록등본 1부</p> <p>㉚ 사진 1매(명함판)</p> <p>㉛ 전총재 추천서(3인) - 중복 불가</p>	내용수정 내용삽입
제6장 사무·재무총장		
<p>제29조 (총장 임명)</p> <p>① 사무·재무총장은 지대위원장 이상을 역임한 자로 총재가 임명한다.</p>	<p>제29조 (총장 임명, 임기)</p> <p>① 사무,재무 총장은 지대위원장 임기(1년)를 역임한자로 총재가 임명한다.</p> <p>④ 유고 시(사망, 해외이민)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역임한 자를 지구 총장으로 인정한다.</p>	문구삽입 내용삽입
<p>제32조 (부총장의 임무)</p> <p>① 지구 총재의 필요에 따라 부총장은 6명 이내로 둘 수 있다. (부총장중 1명은 지구 제1부총재의 추천으로 임명할 수 있다.)</p>	<p>① 지구 총재의 필요에 따라 부총장은 7명 이내로 둘 수 있다. (부총장 중 1명은 지구 제1부총재의 추천으로 임명할 수 있다.)</p>	내용수정

현행	개정 및 신설(안)	개정사유
제7장 지역위원장 및 지대위원장		
제33조 (지역위원장, 지대위원장의 자격과 위촉) 지역위원장은 지대위원장을 역임한 자로, ~	제33조 (지역위원장, 지대위원장의 자격과 위촉) 지역위원장은 지대위원장을 역임한 자로, ~	문구수정
제8장 지구위원장		
제37조 (지구위원장의 구성과 임무) 지구위원장은 지역위원장, 지대위원장과 함께 지구 총재를 보좌하여 지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두되 지구 총재가 필요로 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• 라이온스홍보 및 정보위원회 • 현장위원회 • 윤리위원회 • 회원위원회 • 홍보 및 라이온스 정보위원회	제37조 (지구위원장의 구성과 임무) 지구위원장은 지구 총재, 지역위원장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, 지구 총재가 필요로 하는 37조 1항과 같은 각 위원회 및 추가 특별위원회 구성원 또는 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.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• 라이온스홍보 및 정보위원회 (삭제) • 지구 현장 개정위원회 • 분쟁조정위원회 • 회원위원회 (삭제) • 홍보 및 라이온스 정보위원회 (삭제) • 회관관리위원회	내용수정 내용삽입
제13장 상훈		
제50조 (상) ① 상은 라이온이나 가족회원, 네스로서 훌륭한 일을 하여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총재가 표창한다.	제50조 (상) ① 상은 라이온이나 가족회원, 배우자로 훌륭한 일을 하여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총재가 표창한다.	문구수정



현행	개정 및 신설(안)	개정사유
제14장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		
<p>제51조 (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)</p> <p>① 라이온스 정신에 위배하여 라이온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를 하거나 라이온스 활동의 비위행위, 클럽 또는 기타 라이온스 조직내의 분쟁조장행위 등 라이온스 발전을 저해하는 라이온에 대한 징계 및 분쟁조정을 위해 지구 내에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</p>	<p>제51조 (분쟁조정위원회)</p> <p>① 라이온스 정신에 위배하여 라이온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를 하거나 라이온스 활동의 비위행위, 클럽 또는 기타 라이온스 조직내의 분쟁조장행위 등 라이온스 발전을 저해하는 라이온에 대한 징계 및 분쟁조정을 위해 지구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</p>	내용 수정
제15장 개정		
<p>제56조 (개 정)</p>	<p>제56조 (개 정)</p> <p>⑩ 2025년 3월14일 의결된 지구 헌장 내용 중 8조 ②항 삽입,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②항 문구삽입, ③항 수정, 신생클럽 조직 ②항 문구삽입, 제16조 ①항 문구삽입, 19조 ⑥항 문구수정 22조 ⑥항 내용삽입 제24조 ①항-㉠ 문구수정 ,㉠ 내용삽입 제29조 ①항 문구삽입 ④항 내용삽입, 32조 ①항 내용수정, 제33조 오타로 인한 문구수정, 제37조 내용 수정 및 ①항 위원회 중복내용 삭제 및 수정·삽입, 제50조 ①항 문구수정, 제51조 '윤리 및'문구 삭제로 변경 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.</p>	내용 삽입



현행	개정 및 신설(안)	개정사유
지구헌장부칙 - 제1장 총재, 제1.2부총재 공석시 추천, 선거, 임명		
<p>제1조 지구총재 공석 (국제헌장 부칙 제 2조 5항)</p> <p>③ 지구총재로 취임하는 시점에 ㉠라이온스 클럽의 임원으로서 임기가 전체 또는 과반 이상 만료.</p>	<p>제1조 지구총재 공석 (국제헌장 부칙 제 2조 5항)</p> <p>③ 지구총재로 취임하는 시점에 ㉠국제협회 입회등록 기준 10년 이상인 자로, 지구 임원 중 지역위원장 이상 임기 전체 또는 임기를 반기 이상 역임한 자</p>	내용삽입
제2장 개정		
<p>제2조 발효</p> <p>2022년 3월 15일 제1회 대의원대회에서 신설된 부칙 및 개정안은 이를 채택한 대회 종료시 효력이 발생한다.</p>	<p>제2조 발효</p> <p>① 2022년 3월 15일 제1회 대의원대회에서 신설된 부칙 및 개정안은 이를 채택한 대회 종료시 효력이 발생한다.</p> <p>② 2025년 3월 14일 제1회 대의원대회에서 수정된 개정안은 이를 채택한 대회 종료시 효력이 발생한다.</p>	내용 삽입



현행	개정 및 신설(안)	개정사유
<p>별표1 지구총재(제1,제2부총재) 입후보 등록신청서</p> <p>2.제출서류</p> <p>1) 입후보 신청서 1부 2) 본인 승낙서 1부 3) 소속클럽 이사회 추천 결의서 1부 4) 라이온 경력 및 일반 경력서 1부 5) 연설문 원고(200자 원고지 5매 이내) 1부 6) 사진(명함판) 1매 7) 주민등록등본 1부. 8) 성 금 : 원 9) 선거공영비 : 원</p>	<p>별표1 지구총재(제1부총재,제2부총재) 입후보 등록신청서</p> <p>2.제출서류</p> <p>1) 입후보 신청서 1부 2) 본인 승낙서 1부 3) 전총재 추천서 (3인) 중복 불가 4) 소속클럽 이사회 추천 결의서 1부 5) 라이온 경력 및 일반 경력서 1부 6) 연설문 원고(A4 2장 분량) 7) 사진(명함판) 1매 8) 주민등록등본 1부. 9) 성 금 : 원 10) 선거공영비 : 원</p>	<p>내용 추가</p>
<p>별표9</p>	<p>별표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천서</p> <p>소속클럽:</p> <p>성명 :</p> <p>생년월일 :</p> <p>위 라이온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-B1지구 국제라이온스협회 - 회기 지구총재(제1,제2부총재)입후보자로 추천 및 결의하고 이를 서명 날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	<p>내용 삽입</p>
<p>별표 9 서약서</p>	<p>별표 10 서약서</p>	<p>문구 수정</p>



현행	개정 및 신설(안)	개정사유
지구선거관리규정		
<p>제5조 (등록과 성금 및 공영비)</p> <p>② 지구 총재, 지구 제1, 제2부총재, 감사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과 동시에 성금 및 선거공영비를 현금 또는 시중은행 자기앞 수표로 지구에 기탁한다.</p> <p>⑦ 헌장이 정한 각종 의무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클럽의 회원은 지구 총재 및 지구 제1, 제2부총재 감사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다.</p>	<p>제5조 (등록과 성금 및 공영비)</p> <p>② 지구 총재, 지구 제1, 제2부총재, 감사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과 동시에 성금 및 선거공영비를 현금(계좌이체) 및 또는 시중은행 자기앞 수표로 지구에 기탁한다.</p> <p>⑦ 헌장이 정한 각종 의무금(클럽의무금, 지구임원의무금, 기탁 약정한 광고 및 LCIF 등)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클럽의 회원은 지구 총재 및 지구 제1, 제2부 총재 감사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다.</p>	내용 삽입
<p>제7조 (원고제출)</p> <p>입후보자가 소신을 발표하기 위하여 200자 원고지 5매 이내와 상반신 사진 1매를 입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지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.</p>	<p>입후보자가 소신을 발표하기 위하여 A4 용지 2장 분량의 발표문과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입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지구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.</p>	문구 수정
<p>제9조 (대의원명부 확정과 서식)</p> <p>② 명부에 등재된 대의원이라 할지라도 선거일 전일까지 의무금을 완납치 못한 단위클럽의 대의원은 투표를 행사할 수 없다.</p>	<p>제9조 (대의원명부 확정과 서식)</p> <p>② 명부에 등재된 대의원이라 할지라도 선거일 전일까지 의무금(클럽 의무금 및 지구임원 의무금)을 완납치 못한 단위클럽의 대의원은 투표를 행사할 수 없다.</p>	내용 삽입
<p>제10조 (선거운동)</p> <p>⑧ 입후보자는 개인의 선거용 유인물을 배포 할 수 없다.</p>	<p>제10조 (선거운동)</p> <p>⑧ 입후보자는 개인의 선거용 유인물을 선거기간 이외에는 배포할 수 없다.</p>	내용 삽입
<p>제11조 (사전 선거운동의 규제)</p> <p>㉠ 선거공고일 전년도 12월 1일부터 지구 총재나 지구 제1, 제2부총재 입지자는 호별방문, 클럽방문 또는 금품제공 및 향응제공, 책자나 자신의 저서 또는 자신의 홍보물 배부를 할 수 없다.</p> <p>㉡ 부정선거 사례의 신고방법은 소속클럽과 성명을 기재하여 지구 총재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신고한다.</p>	<p>제11조 (사전 선거운동의 규제)</p> <p>① 사전 선거운동 기간은 대의원대회 날 포함하여 이전 30일 이내로 정한다.</p> <p>② 선거공고일 전년도 12월 1일부터 지구 총재나 지구 제1, 제2부총재 입지자는 호별방문, 클럽방문 또는 금품제공 및 향응제공, 책자나 자신의 저서 또는 자신의 홍보물 배부를 할 수 없다.</p> <p>③ 부정선거 사례의 신고방법은 소속클럽과 성명을 기재하여 지구 총재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신고한다.</p>	내용삽입

현행	개정 및 신설(안)	개정사유
<p>제21조 (당선인)</p> <p>①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</p> <p>단, 투표인은 유자격 대의원(클럽 및 임원 의무금 완납)이어야 한다.</p>	<p>제21조 (당선인)</p> <p>① 단일 후보일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</p> <p>단, 투표인은 유자격 대의원(클럽 및 임원 의무금 완납)이어야 하며, 경선일 경우에는 유자격 대의원 다득표순으로 당선을 확정한다.</p>	<p>내용 삽입</p>
<p>제24조 (당선무효)</p> <p>① 선거 종료후 5일 이내에 제소에 의하여 소집된 위원회 심의결과 위원회 구성원의 2/3이상의 의결에 따른 2차 경고를 받을 경우, 지구 총재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는 차점자가 당선인이 되며 총재는 이를 공고하고 각 클럽과 대의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24조 (당선무효)</p> <p>⑦ 단일 후보일 경우</p> <p>①항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는 긴급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입후보자를 선출하고,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.</p> <p>④ 경선일 경우</p> <p>①항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는 차점자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다시 입후보자를 선출하고,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.</p>	<p>내용 수정</p> <p>내용 삽입</p>
부칙		
<p>제2조 (효력발생 시기)</p>	<p>제2조 (효력발생 시기)</p> <p>⑧항 2025년 3월 14일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5조②항, ⑦항 내용삽입, 제7조 문구수정, 제9조 ②항 내용삽입, 제10조 ⑧항 내용삽입, 제11조 ①항 삽입, 제21조 ①항 내용 삽입, 제24조 ②항 삭제 및 ⑦호,④호 신설된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/p>	
회관기금관리규정		
<p>제4조 (관 리)</p> <p>① 지구회관기금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제1금융권(광주은행 및 시중은행)에 예치하되 금리를 고려하여 예치방법을 지구 총재가 선택한다.</p> <p>③ 예금인장은 총재와 직전총재 공동의 사인으로 한다.</p>	<p>제4조 (관 리)</p> <p>① 지구회관기금은 본 지구 관할구역내 소재한 제1금융권(광주은행 및 시중은행)에 예치하되 금리를 고려하여 예치방법을 지구 총재가 선택한다.</p> <p>③ 예금인장은 총재와 직전총재 또는 전임총재 공동사인으로 한다.</p>	<p>내용 수정</p>
<p>제9조 (시행일)</p>	<p>제9조 (시행일)</p> <p>④ 2025년 3월 14일 제1회 지구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4조 ①항, ③항의 개정된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</p>	<p>내용 삽입</p>

현행	개정 및 신설(안)	개정사유
연수원 운영규정 - 제 2 장 구 성		
<p>제4조 (조 직)</p> <p>① 연수원은 원장 1인, 부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고 약간명의 부교수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4조 (조 직)</p> <p>① 연수원은 원장 1인, 부원장 2인을 포함하여 교수로 구성하고 약간명의 부교수를 둘 수 있다.</p>	내용수정
<p>제5조 (자 격)</p> <p>③ 원장과 부원장이 아닌 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㉠ 지구단위 클럽의 회장을 역임한 자</p> <p>㉡ 지구헌장 제16조 ①항에서 규정한 지구임원을 역임한 자</p> <p>④ 부교수는 라이온스 신입회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건전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.</p>	<p>제5조 (자 격)</p> <p>③ 원장과 부원장이 아닌 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㉡ 지구헌장 제16조 ①항에서 규정한 지구임원중 지대위원장 이상 역임한 자</p> <p>④ 부교수는 라이온스 신입회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회장 이상을 역임한 자, 건전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, 사회에서 강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</p>	내용삽입 내용수정
<p>제6조 (임명·위촉)</p> <p>②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지구총재가 임명하되, 부원장 2인 중 1인은 여성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6조 (임명·위촉)</p> <p>②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지구총재가 임명하되, 부원장 2인으로 한다.</p>	내용수정
<p>제7조 (임 기)</p> <p>①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 교수, 부교수의 임기는 당해 지구 총재의 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원장은 부교수의 임기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구 총재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8조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한 때로부터 당해 지구 총재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7조 (임 기)</p> <p>① 원장, 부원장을 포함한 교수, 부교수의 임기는 3년까지 할 수 있다.</p> <p>②,③항 삭제</p>	내용수정 내용삭제
<p>부칙</p> <p>제1조 (효력발생 시기)</p>	<p>제1조 (효력발생 시기)</p> <p>③ 2025년 3월 14일 지구 제1회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4조 ①항 내용수정, 제5조 ③항㉠호삭제 ④호 내용수정, 제6조 ②항 내용수정, 제7조 ①항 내용수정 ②항,③항 삭제로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/p>	내용 삽입

현행	개정 및 신설(안)	개정사유
포상규정		
	포상규정은 전회기를 기준으로 해당 회기 경제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한다.	기타
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규정		
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	내용 중 '윤리 및' 전체 삭제 분쟁조정위원회로 정정한다.	내용수정
<p>제5조 (분쟁조정 및 징계심의 절차)</p> <p>① 위원장은 분쟁이 접수되거나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시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및 징계 안건 심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 (분쟁조정 및 징계심의 절차)</p> <p>① 위원장은 분쟁이 접수되거나 제 4조 각 항 분쟁 및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및 징계 안건 심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단, 특별한 사안은 총재에게 보고한 후 1회에 한하여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내용 수정</p> <p>내용 삽입</p>
<p>부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</p>	<p>제1조 (시행일)</p> <p>④ 2025년 3월 14일 제1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 5조 ①항 내용수정, ②항 내용 삽입된 내용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/p>	<p>내용 삽입</p>



현행	개정 및 신설(안)	개정사유
회관관리위원회 규정 - 회관관리 운영세칙		
<p>제7조(입주클럽 월 관리비, 전기.수도 등 사용 세부규정)</p> <p>⑥ 클럽행사시 4층 대회의실 이용 경우, 식음료 반입시 사용료(전기/난방, 청소바포함) 100,000원을 납입한다.</p>	<p>제7조(입주클럽 월 관리비, 전기.수도 등 사용 세부규정)</p> <p>⑥ 4층 대회의실 행사장으로 이용시 라이온 대상 200,000원/1일, 외부 300,000원/1일 납입한다. (단 클럽 및 회장단 월례회의, 정기 총회는 제외)</p>	내용 수정
<p>제9조(부 칙)</p>	<p>제9조(부 칙)</p> <p>④ 2025년 3월 14일 제1회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7조 ⑥항의 수정된 규정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내용 삽입

